

스마트폰 수험총서

공부혁명 엠북(mbook.kr)

MEDICAL CARE & HEALTHY



치과위생사 고득점 구강보건법

- ☆ 21분 완성, 고난도 문제 대비, 고득점용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모두 정리
- ☆ 최근 법령 개정 및 신설 내용 반영
- ☆ 스마트폰 화면에 최적화

구강보건법

(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p4)

제2장 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 등(p8)

제3장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p15)

제4장 학교 구강보건사업(p25)

제5장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등(p28)

제6장 보칙(p41~45)

[용어/약어]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는 시, 군, 자치군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시군구등은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지자체는 시도, 시군구

지자체장은 시도지사, 시군구

기본계획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세부계획은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시행계획은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

보건소는 보건의료원 포함

불소사업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치아우식증은 충치

치주질환은 잇몸병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붉은색은 시행 예정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장 총칙

1~4조

1. 목적

가) 법은

- 국민 구강보건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함
- 국민 구강질환 예방, 구강건강 증진

나) 시행령은 법, 시행규칙은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정의

가. 구강보건사업

- 구강질환 예방/진단, 구강건강 교육/관리 등을 해 국민 구강건강 유지/증진

나. 불소사업

- 충치 발생 예방을 위해,
- 상수도 정수장, 수돗물 저장소에서,
-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이용해,
- 수돗물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조정하는 사업이나 관련 사업

다. 구강관리용품(2025년 6월 14일부터 삭제)

- 구강질환 예방, 구강건강 증진/유지 등을 위해 제조된 용품으로서 장관이 정하는 것

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 초등학생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지원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의

책무

- 국민 구강건강 증진 계획 수립/시행
- 구강보건사업 관련 자료 조사/연구, 인력 양성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4. 국민의 의무

-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 시행되도록 협력
- 스스로 구강건강 증진 노력

5.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 국가등은 행사 등 사업 가능

제2장 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 등

5~9조

1. 기본계획

가. 수립

- 장관은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 의무

나. 내용: 다음 사업 포함

- 1) 조사/연구, 교육
- 2) 불소사업

3) 학교 구강보건(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포함)

4) 사업장, 노인/장애인,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5) 경미한 사업

- 인력 역량강화, 양성/수급
- 구강보건 홍보
- 구강보건사업 평가
- 국제협력 등 장관 인정 사업

다. 협의

- 장관은 수립/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미리 협의 요
- 단, 상기의 경미한 사업 변경은 협의 불요

라. 통보

- 1) 장관은 수립한 때 실시 연도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
- 2) 시도지사는 시도 세부계획 수립 후 실시 연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시군구에 통보
- 3) 시군구는 시군구 시행계획 수립 후 실시 연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
- 4) 시도지사는 시군구 시행계획과 함께 실시 연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장관에게 통보

2.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

-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